

의안 번호	842	【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】 검 토 보 고
----------	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1. 8. 25(수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8. 30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9. 6(화)

2. 개정이유

- 개정된 상위법령과 인용된 법령의 조문을 일치시키고,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명 정비
 - 울산광역시중구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(안 제명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정비
 - 「결핵예방법」 제29조제3항 → 제18조제3항
- 다. 별표 처방종류 정비
- 라.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
3. 근거법규 :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제3항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6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 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 없음
- 다. 관련부서 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7. 4 ~ 7. 24(의견 없음)

7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정비와 항 결핵제 처방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
- 주요 개정 내용은
 - 항 결핵제 처방종류를 초 치료와 재 치료를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을 6가지의 처방종류로 조정
 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정비 등
-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다만 항 결핵제 처방 종류의 조정 시기와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항결핵제보급 수수료징수조례		제명 : 울산광역시중구 항결핵제 보 급 수수료 징수 조례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2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시중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 약하는 항결핵제의 <u>보급수수료</u> 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 징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.	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결핵예방법</u> 」 제 18조제3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보급수수료 ----- ----- ----- -----		
제2조(수수료) 항결핵제의 처방별 수 수료는 별표와 같다.		제2조(수수료)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 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는 별표와 같다.		
제3조(수수료 징수) 수수료는 항결핵 제 <u>보급시</u> 마다 울산광역시중구 수입 증지로 징수한다. 다만, 의료보호대 상자 및 교도소 등에 <u>재소중인</u> 환자 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.		제3조(수수료 징수) ----- ----- <u>보급 시</u> ----- ----- ----- <u>재소 중</u> ----- ----- -----		
제4조(수수료의 재활용) 징수된 수수 료는 다음 <u>각호</u> 의 결핵사업비 이외 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<u>아니한다</u> .		제4조(수수료의 재활용)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<u>아니 된다</u> . -----		
1. ~ 3. (생 략) 4. <u>기타</u>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	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		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【별표】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 (단위: 원)				【별표】 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(제2조관련) (단위: 원)			
구 분	처 방 종 류	기 준	수수료	처 방 종 류	기 준	수수료	
			일반환자			일반환자	
초치료	○ 에담부톨+아이나+리팜피신+피라지나미드 6	1인 1월	2,000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담부톨+피라진아미드 6	1명 1개월	2,000	
	○ 스트렙토마이신+아이나+리팜피신+피라지나미드 6	"	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담부톨 6	"		
	○ 에담부톨+아이나+리팜피신 9	"	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담부톨+피라진아미드 9	"		
	○ 스트렙토마이신+아이나+리팜피신 9	"		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담부톨 9	"		
	○ 에담부톨+아이나+리팜피신 6	"		○ 리팜핀+피라진아미드+에담부톨 6	"		
	○ 스트렙토마이신+아이나+리팜피신 6	"		○ 리팜핀+에담부톨 12	"		
재치료	○ 피라지나미드+파스+스트렙토마이신	1인 1월	2,000				
	○ 에담부톨+피라지나마이신+리팜피신	"					
	○ 에담부톨+피라지나미드+카나마이신	"					
	○ 피라지나미드+리팜피신+카나마이신	"					
	○ 에담부톨+리팜피신+카나마이신	"					
	○ 에담부톨+피라지나마이신	"					
	○ 에담부톨+리팜피신	"					
	○ 리팜피신+피라지나미드+에담부톨	"					

【별표】

항결핵제 처방별 보급수수료(제2조 관련)

(단위: 원)

처 방 종 류	기 준	수 수 료
		일반환자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+피라진아미드 6	1명 1개월	2,000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 6	"	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+피라진아미드 9	"	
○ 이소니아지드+리팜핀+에탐부톨 9	"	
○ 리팜핀+피라진아미드+에탐부톨 6	"	
○ 리팜핀+에탐부톨 12	"	

【 결 핵 예 방 법 】

제18조(결핵환자 등의 의료)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 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, [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](#)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